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1
----------	------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충주댐 주변 경관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절차를 삭제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 (1)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시 기존의 공공기반시설과 연계설치 할 경우에는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과 기반시설 설치거리 50미터 이상을 허용 (안 제22조제1호)
- (2)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은 제외), 고물상에 대하여는 상수도·하수도가 미 설치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허용 (안 제22조제2호)
- (3)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삭제 (안 제29조)

- 나.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 (안 제52조제5호)

- 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며, 15층을 초과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건축 (별표 4 제2호)
- 라.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535호, 2008. 1. 08. 공포 2008. 1. 08. 시행)으로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관련 항목삭제 (별표 19제2호 타목)
- 마. 건축법 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으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45조, 별표 3 부터 별표 20, 별표 23, 별표 26)
- 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에 입지 제한하는 소규모공장 업종 정비(79종→55종) (별표 23제2호하목의(11))
- 사.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강화(부칙 제598호)
- 아. 충주댐 주변 경관허가기준 (별표 25)
- (1) 주택 등 건물 배치시에는 인접 건물과 지형의 특성에 어울리게 건축하여 경관이 조화되도록 배치
 - (2) 조경 수목은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
 - (3) 경량조립식 구조로 건축시 미관을 양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허용
 - (4) 대지를 조성할 때 발생하는 비탈면은 그 높이의 합계가 5미터 이하 이어야 하며, 조경석을 쌓을 때 높이는 1.5미터 미만으로 제한
- 자. 기타
- 정부직제개편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건설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안 제3조, 별표 16)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첨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5. 규제개혁심의회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별표 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로, “부지면적 1,000㎡미만인 토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1,000㎡미만)에서 제외한다.”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공공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만,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은 제외한다), 고물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제22조제2호다목 중 “지하수이용시설”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4호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52조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55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제57조 중 “영 제85조제3항”을 “영 제85조제5항”으로 한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98호 부칙 제4조제1항 중 “4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단, 15층이 초과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제2호다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1호자목 중 “카목(1) 내지 (5)”를 “카목(1) 내지 (8)”로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과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 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아래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제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판 제조업
24191	도금, 촉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페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화로판 제조업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3 제1호아목 중 “카목(1) 내지 (5)”를 “카목(1) 내지 (8)”로 하고,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하목중 “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를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로, 같은 표 제2호하목(10)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3 제2호하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제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치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플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화로판 제조업

별표 25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물배치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벚꽃나무 등으로 하여야 한다”를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7호마목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경량조립식철골 구조는 경관 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가능함)”으로 한다.

별표 25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지조성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경사지를 형질변경할 시에는 지형을 활용하고 녹지훼손과 절·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발생하는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녹화공법으로 처리하고, 자연석을 쌓을 때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발생하는 비탈면의 높이는 5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단식 비탈면을 조성할 경우 비탈면 높이의 합계를 말한다.

별표 26 제1호나목 중 “제27호”를 “제27호, 제28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p><u>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u></p> <p><u>2.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u></p> <p>가. (생 략) 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지하수이용 시설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 다.(생 략) 3. (생 략)</p> <p><u>4. 별표19 제2호 카목·타목 및 별표23 제2호 파목·하목에 해당하는 공장</u></p>	<p><u>2. 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은 제외하다), 고물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u></p> <p>가. (현행과 같음) 나. ----- <u>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용시설</u> ----- ----- 다.(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u>별표 1</u>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1. ~ 6. (생 략)</p>	<p><u>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별표 1의2----- ----- ----- ----- ----- 1. ~ 6. (현행과 같음)</u></p>
<p><u>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u>별표 1</u>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u></p> <p>1. ~ 5. (생 략)</p>	<p><u>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별표 1의2----- ----- ----- ----- ----- 1. ~ 5. (현행과 같음)</u></p>
<p><u>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u>별표 1</u>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2. (생 략)</p>	<p><u>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별표 1의2----- ----- ----- ----- 1. ~ 2. (현행과 같음)</u></p>
<p><u>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u>별표 1</u>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규정</u></p>	<p><u>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별표 1의2----- -----</u></p>

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조례 제22조제4호에서 정한 공장에 대하여 영 제57조제4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다.	<삭제>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생략)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 14. (생략) <신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 14. (현행과 같음) <u>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u>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 율) (생략) 1. ~ 4. (생략)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 센트 이하 6. (생략)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 율)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 70퍼 센트----- 6. (현행과 같음)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 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 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 하로 한다.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 물의 건폐율 완화) ----- ----- ----- 제32조 ----- -----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 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구역 등 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단, 별표26에 의한 건축물 미판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미판기준에 적합할 경우 당해 용도지구·구역의 용 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 률) 영 제85조제5항-----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p>부칙<제598호, 2003. 8. 18>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의 제한)</p> <p>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부칙<제598호, 2003. 8. 18>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의 제한)</p> <p>①----- ----- ----- 20퍼센트----- <삭제></p>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략) 2. (생략) 가. ~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 거. (생략)</p>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격리병원-----) 바. ~ 거. (현행과 같음)</p>
<p>[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충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 바. (생략)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p>	<p>[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충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충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충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충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2. -----</p>

<p>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 거. (생 략)</p>	<p>———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단, 15층이 초과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격리병원—————) 마. ~ 거. (현행과 같음)</p>
<p>[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 2.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 너. (생 략)</p>	<p>[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격리병원—————) 마. ~ 너. (현행과 같음)</p>
<p>[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 가. ~ 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 차. (생 략)</p> <p>2.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 ~ 하. (생 략)</p> <p><u><신 설></u></p>	<p>[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격리병원—————) 사. ~ 차.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바. ~ 하. (현행과 같음)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 2.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라. ~ 하. (생 략)</p>	<p>[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격리병원—————) 라. ~ 하. (현행과 같음)</p>

<p>[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 가. ~ 거. (생 략) <u><신 설></u></p> <p>2. (생 략)</p>	<p>[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 가. ~ 파 (생 략) <u><신 설></u></p> <p>2. (생 략)</p>	<p>[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 2.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u>의료시설 중 장례식장</u></p> <p>마. ~ 거. (생 략) <u><신 설></u></p>	<p>[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마. ~ 거. (현행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 2. (생 략) 가. ~ 마. (생 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u>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u></p> <p>사. ~ 차. (생 략)</p>	<p>[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의료시설</u></p> <p>사. ~ 차. (현행과 같음)</p>
<p>[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p>	<p>[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생 략)</p> <p>가. ~ 마. (생 략)</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u>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u></p> <p>사. ~ 타.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_____</p> <p><u>의료시설</u></p> <p>사. ~ 타. (현행과 같음)</p>
<p>[별표 13]</p> <p>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2조 관련)</p> <p>1. (생 략)</p> <p>가. ~ 거. (생 략)</p> <p><u><신 설></u></p> <p>2. (생 략)</p>	<p>[별표 13]</p> <p>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가. ~ 거. (현행과 같음)</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14]</p> <p>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p> <p>2. (생 략)</p> <p>가. ~ 카. (생 략)</p> <p><u><신 설></u></p>	<p>[별표 14]</p> <p>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카. (현행과 같음)</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별표 15]</p> <p>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p> <p>2. (생 략)</p> <p>가. ~ 하. (생 략)</p> <p><u><신 설></u></p>	<p>[별표 15]</p> <p>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하. (현행과 같음)</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별표 16]</p> <p>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32조 관련)</p> <p>1. (생 략)</p> <p>가. ~ 너. (생 략)</p> <p><u><신 설></u></p> <p>2. (생 략)</p> <p>가. ~ 마. (생 략)</p> <p>(1) ~ (2) (생 략)</p> <p>(3) <u>산업자원부장관</u>이 관계 중앙행정기</p>	<p>[별표 16]</p> <p>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제32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너. (현행과 같음)</p> <p>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식경제부장관</u></p>

<p>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바. ~ 파. (생 략)</p>	<p>바. ~ 파. (현행과 같음)</p>
<p>[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p>가. ~ 타. (생 략)</p> <p><신 설></p>	<p>[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가. ~ 타. (현행과 같음)</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p>가. ~ 거. (생 략)</p> <p><신 설></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가. ~ 거. (현행과 같음)</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p>가. ~ 아. (생 략)</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준 공 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 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p> <p>(1) ~ (2) (생 략)</p> <p><신 설></p>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가. ~ 아. (현행과 같음)</p> <p>자.</p> <p>카목(1) 내지 (8)</p> <p>(1) ~ (2) (현행과 같음)</p> <p>자. 「수도권경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p>

의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7) 아래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 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제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택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체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치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플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자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화로판 제조업

차. (생 략)

카. (현행 차목과 같음)

카. (생 략)

타. (현행 카목과 같음)

타.(생 략)

파. (현행 타목과 같음)

파.(생 략)

한. (현행 파목과 같음)

한.(생 략)

거. (현행 하목과 같음)

거.(생 략)

너. (현행 거목과 같음)

너.(생 략)

더. (현행 너목과 같음)

<신 설>

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생 략)

2. (생 략)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삭 제>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
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 (5)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
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
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시설을 제외
한다.
- (6)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
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
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7)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8) 석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9)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
터 이상인 사업장
- (10)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
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
는 경우에 한하다)으로서 1일 폐

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 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리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경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 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판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 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 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파. ~ 너. (생 략)		파.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 1. (생 략) 2. (생 략) 가. ~ 타. (생 략)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타. (현행과 같음)

산업 분류번호		산업 분류번호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9101	원피가공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0111	석유화학제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합물질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6600	마그네티 및 광학매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91	사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3994	석면·암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4132	강판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4191	도금, 캐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6993	석면·암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5922	도금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플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7132	강판 제조업	26221	인쇄화로판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판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체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체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체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체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감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 이온풀리며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 등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거. ~ 머. (생 략)

[별표 25]

충주댐주변 경관 허가기준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 라. (생 략)

<신 설>

거. ~ 머. (현행과 같음)

[별표 25]

충주댐주변 경관 허가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물배치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

되도록 한다

<p>3. ~ 4. (생 략)</p> <p>5. (생 략)</p> <p>가. (생 략)</p> <p>나. 대지내 조경수는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벚꽃나무 등으로 하여야 한다.</p> <p>다. (생 략)</p> <p>6. (생 략)</p> <p>7. (생 략)</p> <p>가. ~ 라. (생 략)</p> <p>마. 건축물의 구조는 파이프천막, 경량조립식철골, 비닐하우스, 합성 및 스판드 구조가 아닐것(단, 농어업용 건축물은 제외한다)</p>	<p>3. ~ 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리 는 수목을 식재한다.</p> <p>다.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_____</p> <p>(-, _____) 제외하며, 경량조립식철골 구조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가능함)</p> <p>8. 대지조성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경사지를 형질변경할 시에는 지형을 활용하고 녹지훼손과 절·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p> <p>나. 발생하는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녹화 공법으로 처리하고, 자연석을 쌓을 때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다. 발생하는 비탈면의 높이는 5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단식 비탈면을 조성할 경우 비탈면 높이의 합계를 말한다.</p>
--	--

<p>[별표 26]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및 미관기준 (생 략)</p> <p>1. (생 략)</p> <p>가. ~ 나. (생 략)</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12호 및 제27호의 건축물</p> <p>2. (생 략)</p>	<p>[별표 26] 건축물 미관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및 미관기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_____ 제27호, 제28호</p> <p>2. (현행과 같음)</p>
--	---

□ 관계법령

【 제3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1조~제26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 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용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정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을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 · 관리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카에 거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52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
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 제55조 관련 】

농지법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 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

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제57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부칙 제4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35호, 2008. 01. 08]

부칙 <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18을 적용한다.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단서조항 삭제<'08.1.8>

【제45조, 별표3~20, 별표23, 별표26 관련】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산재

28.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4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란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란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9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35호, 2008. 1. 08]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핵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轧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체현,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체현,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자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충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타. 삭제 <2008. 1. 8>

【 별표 23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충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충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별표 19 제2호자목(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음·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제1호차록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 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을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별표 20 제2호카목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도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제천시공고 제 2009-441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제 천 시 장

1. 조 레 명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 정 이 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충주댐 주변 경관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삭제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주 요 내 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 (1)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시 기존의

공공기반시설과 연계설치할 경우에는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과 기반시설 설치거리 50미터 이상을 허용 (안 제22조)

- (2)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은 제외), 고물상에 대하여는 상수도·하수도가 미 설치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허용 (안 제22조)
- (3)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투영 면적이 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일 때 개발행위 가능토록 신설(안 제23조)
- (4)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삭제 (안 제29조)

나.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 (안 제52조)

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며, 15층을 초과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건축 (별표 4)

라.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10. 29. 공포 2008. 10. 29. 시행)으로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별표 19)

마. 건축법 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공포 2008. 2. 22. 시행)으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45조, 별표 3부터 별표 20, 별표 23, 별표 26)

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에 입지 제한 하는 소규모공장 업종 정비(79종→55종) (별표 23)

사.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강화(부칙 제598호)

아. 충주댐 주변 경관허가기준 (별표 25)

- (1) 주택 등 건물 배치시에는 인접 건물과 지형의 특성에 어울리게 건축하여 경관이 조화되도록 배치
- (2) 조경 수목은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
- (3) 경량조립식 구조로 건축시 미관을 양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허용
- (4) 대지를 조성할 때 발생하는 비탈면은 그 높이의 합계가 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조경석을 쌓을 때 높이는 1.5미터 미만으로 제한

4.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천시 홈페이지(www.okjc.net)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열람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4월 24일까지 제천시장(주소 : 제천시 천남동 12-2, 참조 지역개발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와 기관인 경우는 단체 및 기관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지역개발과 (전화 043-641-5153, 팩스 043-641-5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 한방재천 함께하는 도민축제」

제천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개발행위허가기준 보완, 공장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 삭제, 청풍호 주변 경관허가기준 보완, 기타 상위법 개정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하고, 차후 조례규칙심의 등 조례개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I. 입법예고 개요

가. 예고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여부와 의견청취

나. 예고기간 : 2009. 4. 03 ~ 2009. 4. 24 (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호.폐.의.지, 읍면동 계시판 게재

II. 입법예고 결과

○ 제시된 의견 : 없음. 끝. 】

*지방시설주사보 만든점	지역계획팀장	결용종	지역개발과장	획대희	미래경쟁분부장	윤증섭
부시장 김광중	시장	영/29	연태영			
협조자 지방시설주사 김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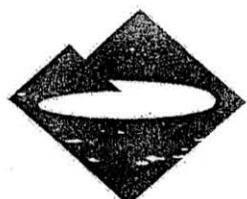
시행 지역개발과-5644 (2009.04.29.)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153 / 전송 043)641-5159 / e-mail:4360KOREA.KR / 공개



★지방시설 주사보	지역개발팀 장	지역개발과 장	미래경영본 부장	부시장	
문서번호 3	안은정	권용중	함대희	윤종섭	05/06 김광중
보존기간 3년	지방시설주사 김명수				
보고일자 2009.05.06.	협 조				

공개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영 검토보고



미래경영본부
지역개발과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결과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영 검토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중 새로이 규제되는 3건 [①토지형질변경시 비탈면면적 제한, ②제2종일반주거지역내 15층초과건물 1층 피로티구조 의무설치, ③중주댐주변경관허가기준 구제화]에 대한 '행정규제 개혁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이며, 검토보고 사항을 바탕으로 '조례규칙심의' 등의 개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I. 규제개혁심의회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09. 4. 30(목) 11:00 ~ 12:30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안건 : 3건, 토지형질변경안전조치 등 (제23조, 별표4, 별표25)
- 심의결과 : 제23조-부결, 별표4-원안가결, 별표25-원안가결

II.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

① 제23조제7호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부결

- 개정안 -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투영면적이 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일 것'
- 적정한 토지이용과 재해방지를 위해서 과대한 비탈면이 생기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협의기준을 40%로 정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약하다는 다수의 의견임 ⇒ **반영(개정안 철회)**

② 별표4제2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결

- 개정안 - '단, 15층이 초과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구조로 한다'
- 1층 피로티 구조는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지만 편의시설, 어린이놀이 등 주민공동공간으로 활용시 주민들에게 양호

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짐 ⇒ **반영**

③ **별표25(충주댐주변 경관허가기준)** ⇒ 가결

○ 개정안- '건물배치는 지형의 특성에 어울리게 배치, 조경수종은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 자연석쌓기 높이 1.5미터 미만, 비탈면의 높이는 5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 지형을 존중하여 대지조성을 함으로써 청풍호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반영**

III. 당초 개정(안) 및 수정개정(안)

당초 개정(안)	수정 개정(안)
<p>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u>별표 1</u>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 사항의 토지형질변경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투영면적이 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일 것</p>	<p>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u>별표 1의2</u>----- ----- ----- ----- ----- ----- ----- 1. ~ 6. (개정안과 같음) <u>< 삭제 ></u></p>
<p>[별표4]</p> <p>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p>	<p>[별표4]</p> <p>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 관련)</p> <p>2. (개정안과 같음)</p>

<p><u>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단, 15층이 초과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한다]</u></p>	
<p>[별표 25] <u>충주댐주변 경관 허가기준</u>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건물배치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u></p> <p>3.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한다. 다.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u> <u>(-, ----- ---재외하며, 경량조립식철골 구조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가능함)</u></p>	<p>[별표 25] <u>충주댐주변 경관 허가기준</u>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u>마. (개정안과 같음)</u></p> <p>3. ~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다.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u>마. (개정안과 같음)</u></p>

8. 대지조성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
야 한다.

가. 경사지를 형질변경할 시에는 지
형을 활용하고 녹지훼손과 절·성
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발생하는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녹화공법으로 처리하고, 자연석
을 쌓을 때에는 높이 1.5미터 미
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발생하는 비탈면의 높이는 5미터
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단식 비
탈면을 조성할 경우 비탈면 높이
의 합계를 말한다.

8. (개정안과 같음)